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
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·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,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6897호, 2020. 1. 29. 공포, 7. 30. 시행)됨에 따라,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 사업의 명칭, 사업시행자의 성명 등을 고시(안 제9조의2)
- 나.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및 수의계약 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규정(안 제32조제2항 신설, 안 제41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0. 00. ~ 2020.00. 00.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를 제9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24조)의 제목 “(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)”를 “(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의 고시)”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7조제2항”을 “법 제8조의2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국립·공립 연구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4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연구기관
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

구기관

6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기관

7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

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입주기업(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)”을 “입주 기업과 연구기관(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입주기업”을 “입주 기업과 연구기관”으로 한다.

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”이란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) 새만금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	제9조의2(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의 고시) ----- 법 제8조의2제4항-----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32조(토지·건물 등의 임대) ① (생략)	제32조(토지·건물 등의 임대) ①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	1. 국립·공립 연구기관
	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	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	4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연구기관
	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

	<u>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</u> 6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7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
② (생략) 제41조(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) <신설>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41조(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) 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”이란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입주기업(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. ④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국가	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----- ----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(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----- -----. ⑤ -----

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1. 2. (생략) ⑤ (생략)	-----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복합도시정책과	
연 락 처	(041) 201-3689